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18 선고 2016가단218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a

2.b

3.c

피 고 d

변론종결 2017.9.20.

판결선고 2017.10.18.

주 문

-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7.10. 접수 제70758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에항하라.
-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고 형제사이이다.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7.10.접수 제7075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차졌다.

다. 망인이 2004.12.17. 경 사망한 이후 원고 a, b, 피고는 2007.6.22. 경 피고의 집에서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원고 c는 원고 a에게 상속재산 합의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원고 a은 위 상속재산합의서에 원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몰래 인감도장을 훔쳐 망인과 상속인의 동의 없이 사전증여 등기를 하였고 쓰다 남은 현금 2,000,000원 착복 상속인과 친지(사촌부부) 면전에서 상속인 피고가 인정하였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 중 원고 C에게 매각대금의 3분의 1을 주기로 사전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이행치 않아 형제간 불화음이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재차 상속재산을 합의한다.

가) 상속재산 중 매각대금에서 3분의2는 피고 몫으로 한다.

나) 상속재산 중 매각대금에서 3분의1은 원고 C 몫으로 한다.

다) 원고 A, B은 상속재산을 포기한다.

라) 단, 위 가), 나), 다)의 내용은 상속인 피고가 2008. 7. 30.전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인 원고 C에게 매각대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한다.

마) 라)의 2008. 7. 30. 이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의 원고 A, B의 상속포기는 철회하고 가), 나), 다), 라)에 불구하고 본 상속재산을 강제 매각하여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인 각 4분의1로 나누기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

라.피고는 2008.7.30.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갑 제3호증의 1은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6.22. 원고들과 사이에 상속재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반복되어 말소되어야 하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이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성남시
대지 66.8m2

2. 위 지상 시엔트블럭 시엔트 기와 주택 점포건물 60.45m2

3. 경기도 성남시
대지 67.1m2